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65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 : 윤한홍・박상웅・권성동

김상훈 • 박덕흠 • 최수진

박형수 · 권영진 · 박정하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다만, 다른 주주의 감자 (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싶어도 지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주식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지체 없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는 등 당초 의도한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 비율이 그 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소유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 사후 승

인을 받거나 소유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4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제1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의4를 제24조의5로 하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로 하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4조의3(종전의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제24조제1항·제5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24조의2)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초과소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이하 "초과소유"라 한다)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초과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초과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회사 주식의 초과소유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다른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초과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가. 제15조제1항·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나. 제15조제1항·제5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제24조의4(종전의 제24조의3)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제5호"를 "제24조의3제1항제5호"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제24조제1항·제5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으로, "소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을 "소유한"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제24조의2제2항"

- 을 "제24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4.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회사 주식의 초과소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회사 주식을 초과소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		
도) ① ~ ③ (생 략)	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u><</u> 삭 제>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			
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			
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			
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5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려면 제1항 및 제4항에	<u>제1항</u>		
도 불구하고 다시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금융위원회는 <u>제1항·제4항</u>	⑥ <u>제1항 또는</u>		
<u>및 제5항</u> 에 따라 동일계열 금	<u>제5항</u>		
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초과 소유요건"이라 한다)을 심사하 여야 한다. 심사를 위하여 필요 하면 그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 구할 수 있다.

1. • 2. (생략)

-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에 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알려야 한다.
- ⑧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 융기관이 제1항·제4항 및 제5 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⑨ (생략)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⑦제1항 또는
제5항
(8)
<u>제1항 또는 제5항</u>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초과소유 주식의 의결
권 제한 등) ① 동일계열 금융
기관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5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
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

과하여 소유(이하 "초과소유"라 한다)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없다.

- ②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초과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24조제 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 식의 소각 또는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 사의 주식을 초과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회사 주식의 초과소유 사실을 금융위원회에보고할 것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다른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초과소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① 금융 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 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 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

유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
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u>가. 제15조제1항·제5항에 따</u>
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u>나. 제15조제1항·제5항에 따</u>
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조치
<u>제24조의3</u> (시정조치 등) ①
제24조제1항·제5항 또는 제24
조의2제2항
1. ~ 5. (현행과 같음)
<샄 제>

<u>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u> <u>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u> 행사할 수 없다.

제24조의3(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아니하면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하는 주식의 장부가액(帳簿價額)에 1만분의 3을 곱한금액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있다.

② ~ ④ (생 략)

<u>제24조의4</u>(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 략)

제27조(벌칙)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 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략)
- 4.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제24조의4(이행강제금) ①
 제24조의3제1항제5호
<u>.</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의5(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제24조의4와 같음)
제27조(벌칙)
1. ~ 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제1항·제5항 또는 제

위반하여	금융위	원회의	의 승	인
을 받지	아니하고	1 주	식을	<u>소</u>
유하거니	나 같은	조 :	제4항	을
위반하œ	정하여	진 7	기간	내
<u>에 승인</u>	을 신청	하지	아니	한
경우				

제28조(과태료)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1. (생략)
- 2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 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 청하지 아니한 경우
- 2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②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24소의2제2항</u>
소유한
제28조(과태료) ①
· 1. ~ 21. (현행과 같음) <u><삭 제></u>
23. <u>제24조의2제1항</u>
24.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u>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u> 주식을 소유한 경우
<u> </u>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③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③ (현행과 같음)